

제286회  
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』

제 안 설 명 자 료



2019. . .

서울특별시교육청

안녕하십니까?

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입니다.

서울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·조언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장인  
홍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『서울특별  
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하여  
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

-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문화예술교  
육 인프라 구축 등 연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, 현  
재 우리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예술교육센터의 설치·운영에  
관한 근거를 마련하고, 상황에 따라서는 예술교육센터 운영  
을 교육지원청에 위임하여 지역 특색에 맞게 운영할 수 있  
도록 하고자 합니다.

□ 관련 법규는

- “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  
하여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·연구 및  
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·장비를 지원할  
수 있다”고 규정한 「문화예술교육 지원법」 제15조(학교  
문화예술교육의 지원) 조항과 “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  
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학교가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를  
연계·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”고 규정한 제18조  
(지역사회와의 지원체제 구축)조항을 들 수 있습니다.

□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

- 교육감이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진흥 사업을 규정한 제11조(진흥 사업)의 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6호를  
-지역사회 연계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로 신설하고자 합니다.

또한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.

- 제11조의2(예술교육센터)제1항 교육감은 학교문화 예술교육 진흥을 위해 예술교육관련 센터(이하 “예술교육센터”라 한다.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제2항 예술교육센터는 제11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을 수행한다.
- 제3항 교육감은 예술교육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예술교육센터장(이하 “센터장”이라 한다.)을 두며, 센터장은 예술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. 다만, 예술교육센터의 운영을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교육장이 소속 지원 중에서 센터장을 지정한다.
- 제4항 교육감은 예술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교육장에게 위임하거나, 사무의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.
- 제5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.

□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